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1322호

2024. 2. 29. (목)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5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4-5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363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삼척시 공고 제2024-365호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삼척시 공고 제2024-374호 지방재정공시(2024년도 예산 및 2022회계년도 결산
수시) ----- 21
- 삼척시 공고 제2024-377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근덕311호(부남리 ~
동막리)] ----- 22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4-5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정하동 48-228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감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기반시설(주차장)의 설치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14 | 평화의다리 주차장 | 정하동 48-228번지 일원 | - | 증) 5,619 | 5,619 | - | 일반공업지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14 | 평화의다리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신설 - 위치: 정하동 48-228번지 일원 - 면적: 5,6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이용객의 편의를 꾀하고 향후 주변 지역의 관련 개발에 따른 수요에 대비 |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별도 붙임

라. 이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4-5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길 152 (우지동) 외 5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 (별지참조)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1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동 78-3, 79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길 152 (우지동) | 20240229 | 신규 부여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 |
| 2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동 60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지1길 55 (우지동) | 20240229 | 신규 부여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활용 (우지길분기) |
| 3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명동 214-4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평동길 439 (동명동) | 20240229 | 신규 부여 | 20090626 | 행정구역명 (평동동명동) 부합관용 |
| 4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108-4, 108-6, 108-7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길 131 (적노동) | 20240229 | 신규 부여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유지) |
| 5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108-4, 108-6, 108-7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길 133 (적노동) | 20240229 | 신규 부여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유지) |
| 6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동 108-4, 108-6, 108-7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적노길 135 (적노동) | 20240229 | 신규 부여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유지) |
| | | 이 | 하 | 여 | 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척시 공고 제2024-363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가의 종별 구분 및 연가 환산 방법 정비(안 제19조제3항)
- 나. 1일 미만의 잔여 연가 시간에 대한 이월·저축(안 제19조제5항)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 다.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를 포상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상 휴가 사유와 일수를 구분하여 정비(안 제23조제6항)

- 라. 신규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 정비(안 제23조제7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0일(10일 연장)
- 마. 선거사무 종사원의 특별휴가 사용기간 정비(안 제23조제14항)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18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 2) 전화 : 033-570-3434
- 3) 팩스 : 033-570-3133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로 한다.

③ 연가는 지각·조퇴·외출, 반일 단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은 연가 1일로 환산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를 “주요”로,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휴가를 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제6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 연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 연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창안·제안”을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 창안·제안 등”으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경우: 연 2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이

상 :“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선거종료일부터 5일 이내
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 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⑧ ~ ⑩ (생략)

⑭ 법정 선거사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포함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선거종료일부터 5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 이상: -----

⑧ ~ ⑩ (현행과 같음)

⑭ -----

다른 -----

-----.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 개정안 | 검토의견서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

삼척시 공고 제2024-365호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삼척시장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리시 관광진흥 여건 개선과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설치와 복잡·다양·전문화된 관광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근거

- 가.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 관광사업자들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3. 주요내용

가. 관광안내소 설치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산재한 관광자원과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나. 관광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12조)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

4. 입법예고기간: 2024. 2. 28. ~ 2024. 3. 1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삼척시 경제진흥국 관광정책과

- 우편: (우)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팩스: 033-570-3141 / 전화번호 : 033-570-3077
- E-mail : c0205cdj@korea.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6. 개정조례안: “붙임2”

6.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3”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 검 토 의 건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

[붙임2]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안내소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2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7.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신 설></u></p> | <p>제6조의2(관광안내소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p> <p>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
| <p><u><신 설></u></p> | <p>제12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p> |

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
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
케팅

2.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
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6. 관광관련 공모전

7.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
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
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다.

삼척시 공고 제2024-374호

2024년도 삼척시 지방재정공시(예산)

우리 삼척시에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증진과 시민들의 재정에 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2024년도 지방재정 운용상황(예산기준)을 2024. 2. 29일 부터 삼척시 누리집에 공시하였습니다.

- ▶ 공시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 공시대상 : 2024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
- ▶ 공시시기 : 2024. 2. 29일부터
- ▶ 공시방법 : 삼척시 누리집(www.samcheok.go.kr)
- ▶ 공시내용 :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아래 사항
 - ▶ 예산규모 :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국외여비 편성현황,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예비비 편성현황
 - ▶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및 인센티브현황
- ▶ 문의처 :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예산부서 (☎033-570-3212)

삼척시 공고 제2024-377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삼척시장

| 읍면 | 도로의 종류 | 노선명 | 노선 번호 | 도로구간 | | 총연장 (km) | 주요 경과지 | 개발계획 | | 지정사유 |
|-----|--------|-----|----------|---------------|----------------|----------|--------|-----------|-----------|-------------|
| | | | | 기점 | 종점 | | | 도로 너비 (m) | 포장 너비 (m) | |
| 근덕면 | 농도 | 동막선 | 근덕 311 호 | 근덕면 동막리 415-3 | 근덕면 부남리 881-10 | 1.08 | 부남리 | 6.0 | 6.0 |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 |

1. 사업의 명칭 : 농어촌도로 근덕311호(부남리~동막리) 도로개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삼척시장
3. 사업시행기간 : 2024. 02. ~ 2024.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설과
5. 노선지정도 : 계제 생략(열람장소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 지목 | 지적 (㎡) | 면적 면적 (㎡)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소재지 | 지번 | | |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소유권 이외 의 권리 내용 | |
| 1 | 근덕면 동남리 | 447 | 전 | 6476 | 312 | | 삼척시 | | | | |
| 2 | " | 1780-102 | 잡 | 17,129 | 577 | | 삼척시 | | | | |
| 3 | " | 448 | 임 | 637 | 172 | | 삼척시 | | | | |
| 4 | " | 448-1 | 임 | 358 | 160 | 삼척시 원당동 117 한양아파트 103-1005 | 김○호 | | | | |
| 5 | " | 449 | 임 | 1,517 | 108 | | 미등기 | | | | |
| 6 | " | 1780-226 | 전 | 3,107 | 2,615 | | 국(환경부) | | | | |
| 7 | " | 1780-103 | 전 | 22,797 | 820 | | 국(환경부) | | | | |
| 8 | " | 산1 | 임 | 15,174 | 274 | 원주시 판부면 대룡길 6-5 | 김○현 | | | | |
| 9 | 근덕면 부남리 | 산143 | 임 | 32,926 | 1,090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제판3길 128 | 이○호 | | | | |
| 10 | " | 664 | 전 | 193,187 | 10 | | 국(환경부) | | | | |
| 11 | " | 184 | 전 | 1,597 | 526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940-5 대추파크빌2차 206-1001 | 김○욱 | | | | |
| 12 | " | 183 | 전 | 1,246 | 405 |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220 | 우○동 | | | | |
| 13 | " | 662-4 | 전 | 850 | 445 | | 국(건설교통부) | | | | |
| 14 | " | 661-13 | 도 | 283 | 89 | | 국(건설교통부) | | | | |
| 15 | " | 661-12 | 도 | 74 | 3 | | 국(건설교통부) | | | | |
| 16 | " | 662-3 | 도 | 115 | 11 | | 국(건설교통부) | | | | |
| 17 | " | 168-3 | 도 | 222 | 18 | | 삼척시 | | | | |
| 18 | " | 167-1 | 도 | 1,750 | 12 | | 삼척시 | | | | |
| 소 계 | | 18필지 | | 299,445 | 7,647 | | | | | | |